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6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 성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안 제6조)

○ 사업지원(안 제7조)

○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 동의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 09. 21. ~ 2016. 10. 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를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의 물리적 특징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명 또는 조경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설계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역할은「성주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성주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